



「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쟁점 분석 」

유수현



## ■ 목 차 ■

### 요 약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1
2. 디지털 저작권 보호 입법 .....	2
3. 디지털 환경과 학술정보 이용 .....	13
4.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 .....	17
5.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실현 .....	24
6. 결론 및 시사점 .....	36
<참고문헌> .....	39



## 《 요 약 》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도서와 같은 저작물은 용이하게 복제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어서 손쉽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도서, 음악, 영화 등 디지털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용될 수 있고 침해될 수 있음.
  - P2P 파일교환, 웹하드에 의한 디지털 파일의 업로딩/다운로딩 등으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 관련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출판,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이 불법복제 및 배포의 주요 대상이며, 학술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함에 있어서 권리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 특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는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는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음. 기술적으로 학술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 디지털 서비스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난관이 존재함.
  -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등의 과제는 IT 선진국인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상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당사자간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저작권법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적인 지원책 및 유인의 제공과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 연구자들에게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디지털화(digitization)는 텍스트 또는 시청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2진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임.
  - 아날로그 형태에서는 복제시 열화현상(degradation)이 발생하여 복제물의 품질(음질이나 화질)이 떨어지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동일한 품질의 복제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자에게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대의 위기가 되고 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우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순식간에 전세계로 저작물이 복제·배포될 수 있어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가능함.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주로 음악, 영상저작물을 위주로 발생해 왔음.
  - 1990년대 말 MP3 음악파일을 P2P로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웹하드를 통한 영화파일의 다운로드 등이 주류임.
  
- 최근 디지털 문서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책 리더의 등장 및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Google Book Search) 등으로 인해 학술정보의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하였음.
  - 특히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는 세계 유명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디지털 화함으로써 저작권자와의 분쟁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전송권 등 새로운 권리를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음.

## 2. 디지털 저작권 보호 입법

### 1) 새로운 권리의 인정

- 전송권은 1996년의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임.
- 전송행위는 일반 공중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제공하거나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의미함.
  -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송행위는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로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을 인정함.
- ‘전송’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며, 저작물을 올린 사이트에 방문객이 전혀 없더라도 전송은 이루어진 것임.
  - 저작물을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놓는 행위가 전송에 해당함.
- 전송은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임.
- 타인이 무단으로 도서를 디지털 복제(scanning)하여 웹사이트에 올려 전송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저작권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2) 디지털 음성송신권

- 디지털 음성송신은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함.
  - 인터넷 방송과 같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음을 송신하는 것.



-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도서를 실시간으로 낭독하는 것은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

□ 저작권자에게는 디지털 음성송신권이 인정되므로, 디지털 음성송신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적용시키는 기술임.

- 즉,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물이 복제·전송·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을 뜻함.

- DVD에 담겨있는 콘텐츠(영화 등)를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임.

□ 기술적 보호조치는 하나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깨질 수 있음. 곧 저작권법상 용어로는 무력화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자신이 적용시킨 기술을 무력화시킨 행위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일정한 경우에 금지됨.

□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ID나 비밀번호의 입력과 같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의 복제 등을 방지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됨.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도 금지시키고 있음.

-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적 제재가 가하여짐.
-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학술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ID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금지될 것임.
-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는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음.
  -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사적복제 등 공정이용을 제한할 여지가 문제점으로 남음.

#### 4) 권리관리정보

-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저작권자, 저작물의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보통 디지털 저작물에 부착되는 것을 의미함.
-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리정보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어서 저작물의 유통에 기여하게 됨.
-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허위 부가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허위 부가된 저작물이 배포되는 경우, 건전한 저작물의 유통이 저해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나 권리관리정보에 제거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됨.

- 디지털 형태로 배포되는 학술정보에는 대부분 권리관리정보 사용이 적합하므로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여러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포털이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등이 OSP에 해당함.

- 인터넷 이용자는 OSP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들고, OSP는 가입자에게 자신의 서버 중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실시함.

-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OSP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학술정보를 올려놓는 것과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려놓게 되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함.

- 가입자들의 숫자는 매우 많고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저작권자는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를 운영하는 OSP에 저작권 침해책임을 묻고자 함.

- OSP는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은 OSP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을 채택함.

- OSP가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고서 침해를 중단시켰다면 침해책임을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되며,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

- 통지 및 삭제

- 저작권자(저작권 주장자)가 OSP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OSP에게 이를 내려달라고 통지한 경우, OSP는 일단 이를 내린 후 이를 올린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OSP의 통지를 받은 가입자는 OSP에게 이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OSP는 경우 이를 다시 올려야 함.
- OSP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OSP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저작권 침해로 판정된 경우)이나 저작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가 올린 자료를 내림으로써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침해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6) 기술적 조치의 적용 의무

-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P2P 서비스제공자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올리거나 교환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기술적 조치는 이용자들이 침해 저작물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거나 저작권 침해 파일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적 조치(filtering)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교환되거나 업로딩 또는 다운로드되지 못하도록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필터링 기능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저작권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키지 않는 OSP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7)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의 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함.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제도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저작물은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은 OSP에게 (i)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ii) 저작권 침해자료를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은 OSP에게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이메일 계정 제외)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은 OSP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료를 올린 OSP의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취하여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에게 (i)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 (ii) 침해 저작물의 삭제, (iii) 반복침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8)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디지털 저작권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① 저작권자가 일시적 복제(RAM 복제)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② 접근통제(access control)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하며, ③ 저작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④ OSP에 의한 침해자의 신원제공과

각 유형별 면책규정 등을 규정함.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등 인터넷상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학술정보는 한층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됨.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 복제물의 사용금지를 위한 법률 등의 제정 등의 의무, 일방 당사자에 의한 구제수단의 제공,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의 인정 및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상세규정, 승소 당사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지급,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도촬(盜撮) 금지 등 집행과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함.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인터넷상에서 학술정보 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등 구제수단을 확대하고 있음.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학가 캠퍼스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고 서적에 대한 해적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집행의 중요성을 부속서에 규정함.

- 이는 대학가에 한정되는 내용이지만 학술정보에 대한 해적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라는 것을 밝힌 것임.
- 또한 주로 도서의 불법 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는 것이 주요한 도서이용 행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가에서 학술정보를 디지털 환경하에서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확대

-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서 범죄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가 가하여질 수 있음.
-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곧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범죄인)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됨.
- 저작권 침해죄를 일부 비친고죄로 적용한 것은 저작권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임. 대량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공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 또한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GDP 기여, 일자리 창출효과, 국위선양 등)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적 구제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 10) 일시적 복제

- 일시적 복제는 RAM(Random Access Memory)에 복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영구적인 복제와 달리 ‘일정한 시간동안에만’, 곧 RAM 복제에 있어서 컴퓨터를 켜놓을 때는 복제되지만 꺼놓았을 때는 지워지는 것을 의미함.
- RAM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사라지기 때문에, RAM에 저장된 것

은 일시적인 것임.

□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다른 서버에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일시적 복제를 하는 것임(물론 이를 하드웨어에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영구적인 복제가 됨).

- AoD(Audio on Demand)나 VoD(Video on Demand), 그리고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등이 일시적 복제에 의한 것임.

□ 과거에는 카세트테이프, CD, 비디오테이프, DV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를 소유하여 콘텐츠를 향유하였으나, 이제는 MP3 파일이나 영화파일을 이용하거나 일시적 복제에 의하여 콘텐츠를 향유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는 저작물 내지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시적 복제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될 것임.

-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저작물 내지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시적 복제에 의한 향유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모든 디지털 저작물은 스트리밍 등 일시적 복제의 방법으로 이미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PDA, 핸드폰, 휴대가능한 DTV, DMB, 휴대인터넷(WiBro) 등 기기 및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음.

- 특히 도서나 저널과 같은 학술정보의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기기(device)에 저장하지 않고 일시적 복제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

□ 일시적 복제에 있어서 쟁점은 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곧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여부임.



- 일시적 복제가 콘텐츠 내지 저작물 이용의 주된 행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저작권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일시적 복제의 인정 여부는 1990년대 말부터 저작권 분야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어 왔으며 한미간 통상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일시적 복제 개념을 인정하였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던 2008년도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일시적 복제에 의한 콘텐츠 제공이 주류적인 서비스가 된다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일시적 복제를 반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여야 할 것임.
  - 구글의 도서검색도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복제에 의한 것임.
  - 영상이나 음악은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하여 일시적 복제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학술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임. 학술정보 서비스도 일시적 복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11) 공정이용

-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사유로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복제, 도서관에 의한 복제 등을 규정함.
- 공정이용의 원리는 이러한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원리임.

-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새로이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공정이용의 원리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수 있음.

□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정이용의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 유력함.

- 개정안에 의하면 ① 영리 또는 비영리 등 타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UCC(User-Created Contents, User-Generated Contents)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도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하여 유통시킬 수 있음.

- 개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디지털 콘텐츠)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공정이용의 원리가 저작권법에 도입된다면 패러디나 비판, 비평 등을 위한 타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3. 디지털 환경과 학술정보 이용

#### 1) 데이터베이스

- 저널, 논문, 신문, 판결, 법률 등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인터넷상에서 이용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데이터베이스는 학술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이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학술논문은 구별됨.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일정한 권리, 곧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개별적인 저작물의 복제 등이 수반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 학술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함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관련됨.
-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도 사실상 도서관 장서, 곧 학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임.
  - 학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학술 저작물의 디지털화 내지 지식기반 사회를 앞당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음.

- 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국가의 지식경쟁력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임.
- 학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 2)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영화·음악·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이 모바일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임. 모바일 형태에 의한 학술정보의 이용 증가는 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분야의 산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모바일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유통경로가 조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MP3 파일교환에 의한 음악산업의 와해나 웹하드 등에 의한 영화산업의 피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
- 최근 트위터나 미투데이(me2DAY)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술정보 이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트위터의 경우 올릴 수 있는 글자의 숫자가 비록 140자에 한정되지만, 전자책의 2-4줄을 그대로 복제하여 올릴 수 있음. SNS의 특성상 트위터에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퍼져갈 수 있음.
  - 트위터에 전자책의 2-4줄만을 올리거나, 이를 연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됨.
- 트위터에 텍스트 형태의 2-4줄만 복제하여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

는가 아니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함.

###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하여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찾아내서 이용허락을 받기까지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됨.

□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한 표시를 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의 형태임.

- CCL은 저작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저작자들을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임.

- CCL은 모든 저작권을 주장하는 ‘All rights reserved’가 아니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No rights reserved’도 아닌 ‘Some rights reserved’로, 저작권자가 일부 권리만을 유보하는 것임.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교수인 Lawrence Lessig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이 내는 기부금과 정보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저작물, 특히 대부분의 학술저작물 저작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않음.

- 도서 판매 등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의한 비상업적

사용은 허용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CCL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학술저작물의 광범위한 유포를 가능하게 함. CCL은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약화됨.
- 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CCL에 의한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한다면 학술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음.

## 4.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

### 4.1 디지털 도서관과 전자출판

#### 1) 전자출판 및 전자책

□ 전자출판은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 배포를 핵심적인 요소로 함.

- 전자책(e-book)은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도서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지칭함.

□ 전자출판은 전자책(e-book)이나 전자적인 기사·글을 디지털 형태로 출판하거나 디지털 도서관 및 카탈로그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위주로 하여 CD나 DVD, 모바일기기에 의한 출판도 포함함.

- 전자출판은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진(born digital) 것이거나 종이 형태(printed-on-paper)의 도서를 디지털화하는(digitized)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전자출판은 디지털 형태로 된 도서를 출판업자, 도서관, 온라인 서점, 전자책 리더 제조업자 등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이나 스트리밍의 형태로, 컴퓨터·휴대전화·전자책 리더를 통하여 읽을 수 있음.

- 전자출판의 대상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이며, 디지털 형태의 도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책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컴퓨터 화면이나 전자책 리더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외국에서는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넥서스원’, 그리고 소니의 ‘포켓에디션’ 등의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 추세임. 최근 PMP나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학술정보를 전자책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외형상 전자출판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성장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이며, 전자책 리더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는 학술정보는 많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음.
- 전자출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쟁점 등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고 저작자-출판업자-유통업자의 각각의 역할과 합리적인 상호관계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자출판에 있어서는 저작자-출판업자-유통업자 간에 저작권 등 권리처리 문제, 저작권 이용료 산정 및 지급, DRM 등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여러 저작권법적 쟁점과 상호 신뢰관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전자출판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안방 도서관 내지 디지털 도서관임.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방 도서관임.
- 안방 도서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장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어야 하므로, 안방 도서관은 결국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을 실현하게 될 것임.
  - 안방 도서관 내지 디지털 도서관을 실현함으로써 컴퓨터, PDA나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 전자책 리더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장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임.

## 2) 전자출판의 저작권 쟁점

-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는 전자출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저작권법상 출판은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복제·배포하는 것으로서 아날로그적인 출판을 의미함.



-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의미함.
  - 출판권은 출판의 요소가 되는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임.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은 출판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출판권자가 직접 침해정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행 저작권법상 전자출판은 출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간에 출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채권적인 형태의 이용허락에 불과한 것이 되며, 배타적인 형태의 출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종이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출판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출판을 저작권법상의 출판의 범주에 끌어들이 필요 있음.
- 출판권의 개념뿐만 아니라 출판권의 존속기간(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 등 출판권이 아날로그 출판(인쇄 출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전자출판을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포섭시켜야 함.

### 3) 전자출판물의 보호

- 전자출판에 있어서도 저자-출판업자-유통업자 간에 저작권 등 권리처리나 저작권 이용료 산정 및 지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집중관리 단체의 활용을 들 수 있음.
  - 전자출판에 있어서 저작자와 출판업자 간에는 저작권 처리미비나 저작권을 처리하였으나 이용허락기간이 종료한 경우의 출판과 같이 저작권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저자-출판업자-유통업자 3자간의 이용료 산정 및 분배의 투명성은 전자출판의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접근, 이용자 및 이용권한의 인증, 콘텐츠의 위치·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조건의 규정, 이용내력의 기록,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검색기능 지원, 이용료의 산정·과금·징수 등 다양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음.
  - DRM의 기능은 전자출판에 있어서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고 따라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원활한 유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권리자가 다양하여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받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집중관리단체임.
  - 저작자나 출판업자가 난립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물 이용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출판도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을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전자출판이 활성화될 것임.
  - 일반적으로 전자책 리더는 DRM 기능을 장착하고 있으나, 이것도 결국은 기술이므로 무력화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은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규정만으로 전자출판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성숙된 문화의식이 매우 중요함.

#### 4.2 디지털 도서관과 현행 저작권법상 쟁점

-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을 의미함.

- 나아가 도서관의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디지털로 전환되어 진정한 안방 도서관을 실현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궁극적인 지향점임.

□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서는 한국에서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i)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ii)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이용자를 위하여 도서관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관내 전송)과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관외 전송)을 허용함. 관내 전송 및 관외 전송의 허용은 디지털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나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관내 전송과 관외 전송은 디지털 도서관을 추구하여 도입된 조항이나, 관내 전송의 경우,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음.
- 관외 전송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음.
- 도서관이 관내 및 관외 전송을 위하여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Google Book Search)가 인터넷상에서 도서를 제공하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관외 전송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
- 학문의 특성상 시급한 유통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의학 분야의 학술정보에 대해서도 디지털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외 전송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판매용 자료에 대하여 관외 전송하는 경우, 이용료(보상금)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 지급이 전제조건임.
  - 예컨대 도서관에 의한 관외 전송·복제를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은 매우 미미하여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 창작 및 서비스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전자출판 및 디지털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득분배도 왜곡되지 않을 것임.
-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규정은 모든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
  -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측면보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른 디지털 복제 및 서비스가 뒤따르게 되므로 저작권 문제가 전면에 나타나게 됨.
-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규정은 아날로그 시대의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도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음.

- 안내 및 관외 전송은 현재의 IT 기술을 일부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용될 수 있는 현재의 기술과 비교한다면 이용자는 물론이고 도서관 종사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아날로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도서관 규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특별 입법의 형태에 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

## 5.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실현

### 1) 구글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

□ 구글 도서검색은 인쇄형태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검색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임.

- 구글은 2004년 10월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 검색엔진을 통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Google Print Service'를 발표하였고,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함.

- 2004년 12월 구글은 하버드, 스탠포드, 미시간,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 및 뉴욕공공도서관(NY Public Library) 등과 협력하여 이들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구글은 디지털 복제한 이미지의 각 단어를 색인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글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 이용자가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 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와 검색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의 일부분(snippet, 곧 발췌문)을 검색결과에서 제공함.

-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books in the public domain)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글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하는 파트너 프로그램(Partner Program)의 경우, 보여줄 수 있는 도서의 범위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저작권자도 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함.

□ 파트너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도서(70% 정도

로 추정)의 경우,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할 때 까지는 검색결과로서 도서의 일부분(snippet)을 제공함.

-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중단하며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opt-out)을 택하였음.

## 2) 저작권자들과 구글간 분쟁

- 저작권자들은 구글의 디지털 복제 행위와 도서의 일부분에 대한 서비스 행위를 구글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저작권자에게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임승차로 판단함.
- 2005년 9월 작가조합(Authors Guild)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0월에는 5개 출판사가 역시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의 쟁점은 구글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였음.
  - 구글은 복제·배포·전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어 복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2008년 10월 28일 작가조합, 미국출판협회(AAP) 및 구글은 법원에 심리중이던 소송에 대하여 화해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3) 화해안의 내용

- 구글은 구글이 획득한 모든 도서와 삽입물을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도서관은 구글이 복제할 수 있도록 도서와 삽입물을 제공함.
- 구글은 권리자에게 최소 4,500만 달러를 지급함.

- 구글은 미국 내에서 (i)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를 도서관 등 기관에게 제공하며, (ii) 도서를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iii) 온라인 도서 페이지(Online Book Page)에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iv) 기타 서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구글은 도서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 중 70%(70%의 10%는 운용비용으로 공제, 결국 63%)를 권리자를 위하여 도서권리등록소(Book Rights Registry)에 지급하고, 도서권리등록소는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함.
  - 구글은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게 될 도서권리등록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3,450만 달러를 지급함.
- 화해안은 소위 Opt-out 방식을 취함으로써, 화해에 구속받지 않고자 하는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화해에서 제외되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화해의 내용에 구속됨.

#### 4) 화해안의 장점

-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 복제의 방법으로 집적하여 인류 최대의 지식의 보고(寶庫)를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인터넷상에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게 함. 도서, 심지어 절판된 도서도 디지털 복제되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장을 제공함.
-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고아저작물은 이용허락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짐.
  - 화해안은 인터넷상에서도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



## 5) 화해안에 대한 비판

### □ 화해자의 대표성과 미래의 침해행위까지 면책

- 소수의 당사자들(미국의 일부 저작권자 및 출판사)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위하여, ‘미래의 침해행위’까지도 합법화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권리자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빼앗고 이를 손상시키게 될 합작기업(joint venture)”의 설립을 허용한다고 비판함.

### □ 한 국가(미국)의 영리회사인 구글이 지식의 보고를 통제함.

- 구글이 전세계 디지털 도서관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이 사기업의 경영 정책에 따라 축소되거나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함. 즉, 사기업은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

### □ 프라이버시 문제

- 구글의 서비스는 개인이 도서를 이용하는 행위(읽거나 검색하는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마치 감시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되어 지적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음.

### □ Opt-out과 Opt-in의 문제

-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천문학적인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구글이 선택한 방안은 구글이 일단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되 저작자 및 출판업자는 이러한 디지털 복제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Opt-out이었음.
- Opt-out 방식에 의하여 구글이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를 위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자가 복제를 하지 않도록 구글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것임.
- 곧 화해에 구속받지 않고자 하는 권리자는 구글에 ‘적극적으로’ 화해에서

제외되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화해의 내용에 구속됨. 바로 이 점이 저작권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책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Amazon)의 서비스(search inside the book)와 다른 것임.

- 저작권의 발생은 무방식주의(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작물 창작 즉시 권리발생)에 의하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화해안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오히려 통지를 하여야 함.
-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안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작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인 베른 협약이나 WIPO 저작권조약과 각국의 국내 저작권법(한국의 경우 전송권)을 위반하게 될 것임.

## 6) 수정 화해안의 내용

- 2009년 10월 7일 화해안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성 심리가 연기되었고, 2009년 11월 13일 당사자들은 수정된 화해안을 제출.
- 도서권리등록소의 이사에 캐나다, 영국 및 호주의 권리자 대표를 포함시키고, 이들 각 국가의 저작자 및 출판업자 최소한 1명을 이사로 참가시키기로 함.
- 구글이 화해안과 권리자가 지시한 바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도서권리등록소가 구글의 도서이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저작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 대리인(fiduciary)을 임명하도록 함.
  -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의미함.

-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는 도서관 장서를 모두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고아저작물도 대상에 포함.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최혜국대우조항(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삭제함.

## 7) 화해안과 이용허락

화해안에 의하면 도서관은 구글에게 도서와 삽입물을 제공하며, 구글은 도서와 삽입물을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됨.

구글의 화해안은 구글이 모든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화해안의 이용허락은 비배타적이므로 구글의 경쟁자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 후 서비스하기 위하여 장서의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임.

-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용허락을 하는 권리자들 중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권리자들도 존재할 것임.

- 구글은 화해안에 의하여 이러한 거래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모든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임.

특히 화해안에 의하여 구글은 고아저작물도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화해안은 구글이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고아저작물을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이용허락을 받는 자체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임.

□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필수적이므로, 구글의 화해안은 ‘결과론적으로’ 훌륭한 선택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해결은 특별 입법 등 입법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임.
- 화해안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처리는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법원이 승인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이러한 처리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음.

## 8) 화해안의 도서관 관련 문제점

□ 수정된 화해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많은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음.

### (a) 지적자유 의 제한

□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규정한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는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구글과 권리자간의 화해안은 이러한 지적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도서관계는 이용자들의 지적자유 보장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헌장(Library Bill of Rights)’에 잘 나타나 있음.

- ① 도서를 비롯한 모든 도서관 자원이 흥미·정보 및 계몽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배경이나 견해를 이유로 자료제공이 배제되어서는 안 됨.
- ② 도서관은 현재와 역사적인 쟁점에 관한 모든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당파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됨.
- ③ 정보제공과 계몽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열에 대처하여야 함.
- ④ 표현의 자유와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되는 모든 자와 협력하여야 함.
- ⑤ 도서관 이용이 이용자의 출신·연령·배경이나 견해에 따라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됨.
- ⑥ 도서관의 시설을 공중에 제공시 이용자의 신념이나 관계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함.

□ 또한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하여 지적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프라이버시 보호는 도서관이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로서,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신상명세나 이용자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화해안은 구글과 도서관등록소가 어떻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있음.
- 구글도서검색은 쿠키, IP 주소, 이용자가 접속한 웹사이트를 알아낼 수 있는 파일(referrer logs) 등에 의하여 어떤 이용자가, 어떤 도서의, 어느 부분을 읽는지 등 이용자의 과거 및 현재의 독서행위를 추적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이용자들은 검색에 의하여 독서나 검색행위에 관한 데이터가 추적되고 집적으로 인한 제3자의 감시를 두려워할 것이며, 결국 도서를 읽고 구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구글 화해안에 따른 서비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특정 도서’를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어서 지적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화해안은 구글에게 디지털 복제한 도서 중 15%를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제공하는데, 바로 여기에 특정 도서를 서비스에서 배제시키라는 압력이 가하여질 수 있음.
  - 즉, 중앙·지방정부, 외국정부, 이해단체 등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 구글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압력을 예상하여 미리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면, 특정 부분의 자료가 이용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지적자유가 손상될 수 있음.

(b) 기관구독에 대한 가격 책정의 문제점

- 구글 화해안은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기관(도서관 등) 구독에 의하여 (i) 도서의 시장가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며, (ii) 도서에 대한 일반 공중(고등교육기관 포함)이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관 입장에서는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희귀도서·절판도서·고서 등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보존 및 이용의 용이성 및 비용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런데 이익 최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글서비스의 가격책정은 기관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격책정의 문제는 도서관 및 그 이용자들의 지식 접근을 제한하여 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인 지식접근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c) 기타 문제점

도서관간에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관구독서비스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도서관 간, 그리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독점으로 인한 도서관 문제점

- 구글 화해안은 구글과 도서관리등록소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온라인상에서 도서관 장서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을 제공함.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남용되는 경우 도서관의 기본적인 가치인 접근, 공정성, 프라이버시 및 지적자유가 위협받게 됨.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의 보호 문제

- 구글은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하여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함.
- 고아저작물의 경우 사실상 도서관리등록소, 곧 일반 권리자들이 고아저작물 서비스 이용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이들 권리자들은 고아저작물이 자신들과 경쟁하지 못하게 할 동기를 가지게 됨.
- 화해안은 고아저작물 대리인을 통하여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고아저작물의 성격상 근본적으로 그 저작권자가 보호받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고아저작물의 서비스로 거두어들인 수익이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에게 일부 분배되지만 대부분은 분배되지 못하고 일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이해관계의 충돌

- 구글의 화해안에 의하면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해관계의 충돌은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들 상호간 및 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도 존재함.
-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한 구글의 독점은 지식의 보고에 대한 통제를 낳게 됨. 이것은 구글과 구글의 경쟁자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국가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9) 한국에 대한 구글화해안의 시사점

- 구글 화해안은 사이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지 디지털 도서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실로 도서관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내용임.
- 구글이 3,000만권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는데 7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도서관 장서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실현은 국민들의 지식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IT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국에서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함에 있어서 비용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임.
- 미국 도서관들은 도서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나 민간재단이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매우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독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의 사후 감독 등 가격책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반독점·프라이버시 침해·지적자유의 손상 등 구글 화해안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는 오히려 인류의 상식이나 시대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 한국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글 화해안에 가하여지는 비판을 고려하여야 함.

## 6. 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 및 배포가 용이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오프라인보다 보다 더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디지털 형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쉬워짐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송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일정한 의무부과, 권리관리정보의 삭제 등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제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권고제도의 도입 등을 해 왔음.
  -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지고, 적법한 저작물 공급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자·이용자·유통업자 모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임.
-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것임.
  - 적법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풍선효과와 같이 규제만으로는 해적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임.
- 디지털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위하여서는 적법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한 저작권자의 노력, 이용자들의 저작권 존중의식,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간의 상호간의 신뢰관계 등이 필요할 것임.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만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적절하고 적법한 유통을 보장할 수 없음.

-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와 같이 한국에서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사실상 불가능함.
  - 수백만 장서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인터넷상에서 도서관 장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 입법적인 해결책과 아울러 행정적으로 여러 민간기업이 디지털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부가 일정 부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용허락이나 고아저작물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더라도,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구글과 같은 포털·도서관·일반 기업체 등 민간기업이 도서관의 방대한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곧 콘텐츠의 불법 복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집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현행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킬 의무를 부과시키고,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하고, OSP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저작권 침해죄를 일부 비친고죄화하는 등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을 받아 발효된다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유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여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적법시장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권리자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새로운 기술 및 환경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관·정보센터 등의 정보서비스 기관, 저작권자,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서관의 공공성, 저작권자의 이익, 이용자의 정보접근 이익 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이루어져야 함.
  -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일시적 복제가 이미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들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작물 공급이 이용자의 수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불법적으로 콘텐츠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참고문헌〉

- 김병일. 2007.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20(2): 20-36.
- 송영식 등. 2008. 「지적소유권법 상, 하」. 서울: 육법사.
- 송영식, 이상정. 2007. 「저작권법개설」. 서울: 세창출판사.
- 심동섭. 2006.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19(4): 47-65.
- 오승중. 2008.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유수현. 2010. “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계간저작권*, 23(1): 38-55.
- 이대희. 2009. “구글 도서검색과 인터넷상 도서이용의 과제.” *정보법학*, 13(3): 135-163.
- \_\_\_\_\_. 2010. “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계간저작권*, 23(1): 4-25.
- 이해완. 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정상조 편. 2007. 「저작권법 주해」. 서울: 박영사.
-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서울: 명문프리컴.
- Band, Jonathan. “The Long and Winding Road to the Google Books Settlement.” *The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9(2): 227-329.  
<<http://www.jmripl.com/Publications/Vol9/Issue2/Band.pdf>>.
- Bennett, Jesse S. 2008. “Caching in on the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A Novel Approach to the Fair Use Defense and the DMCA Caching Safe Harbor.”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35: 1003-1039. [cited 2010. 8. 10].  
<<http://www.law.fsu.edu/journals/lawreview/downloads/354/bennett.pdf>>.
- Burk, Dan L. 2008. “The Mereology of Digital Copyright.”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18: 711-739.
- Grimmelman, James. 2009. “The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Ends, Means, and the Future of Books.” *American Constitution So-*

ciety for Law and Policy. [cited 2010. 8. 10].

<[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24&context=james\\_grimmelman](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24&context=james_grimmelman)>.

Hayes, David L. 1998. "Advanced Copyright Issues on the Internet."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7(1): 1-104.

Nimmer, David 2000. "A Riff on Fair Use i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8(3): 673-742.

Proskine, Emily Anne. 2006. "Google's Technicolor Dreamcoat: A Copyright Analysis of the Google Book Search Library Project."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1: 213.

Reach, Catherine Sanders, Whelan, David & Flood, Molly. 2003. "Feasibility and Viability of the Digital Library in a Private Law Firm." *Law Library Journal*, 95(3): 369-381.

Samuelson, Pamela. 1999.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Digital Economy: Why th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4: 519-547.

<<http://people.ischool.berkeley.edu/~pam/papers/dmcapaper.pdf>>.

Schlachter, Eric. 1997. "The Intellectual Property Renaissance in Cyberspace: Why Copyright Law Could be Unimportant on the Internet."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2: 15. [cited 2010. 8. 10].

<<http://www.law.berkeley.edu/journals/btlj/articles/vol12/Schlachter/html/reader.html>>.

◀ 저 자 ▶

유수현 | · KISTI 정보서비스실 선임연구원  
· yoosu@kisti.re.kr

KISTI 지식리포트 제13호

##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쟁점 분석

인쇄 2010년 10월 5일

발행 2010년 10월 7일

펴낸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펴낸이 박영서

편집장 최희운 편집간사 노경란

주소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전화 042-869-1234, 팩스 042-869-109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화 02-3299-6114

등록 1991. 2. 12, 제5-258호

ISBN 978-89-6211-543-7 93020

인쇄처 승림디엔씨